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0. 2. 23

나. 제 출 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2000. 2. 23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7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00. 2. 29) 상정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이중욱)

□ 제안이유

○ 2000년 주민자치센터 전면실시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그 동안 시범 동을 운영하면서 준칙이 없어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여 조례제정의 필요가 있었음

□ 주요골자

○ 주민자치센터(안 제2조)

• 동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

○ 운영원칙(안 제3조)

• 주민의 문화, 복지 및 편익의 증진

•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 동사무소별 자율적인 운영유도

•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 정치적, 당파적 이용 목적의 배제

○ 시설 및 프로그램 설치 운영(안 제4조 내지 제7조)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요구한 시설을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동장이 한다.

•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안 제15조 내지 제17조)

• 기 능 : 자치센터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해촉은 동장이 한다.

• 구 성 : 15인 이상 25인 이내 구성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안 제7조제3항에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탁하면 복지관화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 위탁을 하려면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위탁이 쉽지는 않음
○ 문화센터 등에 위탁을 하면 자원봉사자가 필요 없지 않은가?	○ 필요 없게 됨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수정안의 요지

○ 별첨 참조

6. 심사결과

○ 수정의결

7. 소수의견 요지

○ 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두면 각 동이 추진하다가 어려우면 위탁을 함으로써, 복지관화될 우려가 있으며 주민자치 시행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본 조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임

○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의 임기를 제한없이 계속 연임하도록 하면 조직의 효율적 운영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 보다 유능한 지역주민에게 자율적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기 위하여 임기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번호	제288호
의결년월일	2000. 3. 3 (제77회)

제출년월일 : 2000. 2. 29

제 출 자 : 행정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정부의 시책에 의거 현재 시범운영 중인 주민자치센터가 금년 6월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준칙에 근거하여 부천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기능 등 조례를 제정하는 안으로

○ 주민자치센터가 처음 운영되고 또 운영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충분한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면 운영상 어려울 경우 쉽게 위탁으로 전환함으로써 복지관화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본래의 목적에도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 위원구성에 있어 주민이 주민의 대표로 선출한 지방의회 의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자 하며

○ 위원의 임기를 한정없이 연임하도록 할 경우 너무 오랫동안 재임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 보다 유능한 지역주민에게 자율적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주고자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장기재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내부갈등을 해소하고자 순환하여 맡을 수 있도록 위원장과 부위원장직을 연임할 수 없도록 하며

○ 본 조례의 세부 운영세칙을 정함에 있어 위원회의 의결까지 하도록 한 것은 위원회의 권한을 너무

넓게 부여하는 것이며 위원회는 심의기능만으로도 충족하다고 판단하여 의결사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당해 동사무소의 동장,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조항 삭제(안 제7조제3항)

○ 제7조제3항의 삭제에 따라, 제10조를 행정자치부의 준칙대로 조정

○ 지방의회 의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추가삽입(안 제17조제1항)

○ 당연직 위원은 위촉을 제외하도록 조정(안 제17조제2항)

○ 위원장과 부위원장직은 연임할 수 없도록 조정(안 제17조제4항)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가능(안 제17조제5항)

○ 본 조례의 세부 운영세칙을 정함에 있어 위원회의 의결기능 삭제(안 제25조)

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운영) 제3항를 삭제한다.

제10조(사용료 등)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사용료 등) ①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동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은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하되 별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 등)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위원은 지방의회 의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동장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연임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등)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운영) ①(생략)	제7조(운영) ①(제정안과 같음)
②(생략)	②(제정안과 같음)
③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동장,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삭제)
제10조(사용료 등) ①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사용료 등) ①·····원칙으로 하되, 동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와, 동조 제3항에 의거 자치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단체는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은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하되, 「별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의 정하는 범위 안에서 동장이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③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삭제)
제17조(구성 등) ①위원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17조(구성 등) ①위원은 지방의회 의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동장은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	②동장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당해 동사무소의

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③(생략)	③(제정안과 같음)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연임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⑤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25조(시행규칙 등) ····· ····· ·····심의를····· ·····

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288호
의결년월일	2000. 3. 3 (제77회)

제출년월일 : 2000. 2. 23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정이유

○ 2000년 주민자치센터 전면실시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그 동안 시범동을 운영하면서 준칙이 없어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여 조례제정의 필요가 있었음

□ 주요골자

○ 주민자치센터(안 제2조)

• 동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

○ 운영원칙(안 제3조)

• 주민의 문화, 복지 및 편익의 증진

•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 동사무소별 자율적인 운영유도

•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 정치적, 당파적 이용 목적의 배제

○ 시설 및 프로그램 설치 운영(안 제4조 내지 제7조)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요구한 시설을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동장이 한다.

•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안 제15조 내지 제17조)

• 기능 : 자치센터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해촉도 동장이 한다.

• 구성 : 15인 이상 25인 이내 구성

[수정안 포함]

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 "단체"란 관할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동사무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에 배제

제2장 주민자치센터

제4조(설치 등) ①자치센터는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자치센터의 동사무소별 명칭은 당해 동사무소의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한다.

제5조(기능) ①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문화 행사, 취미교실,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2.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3.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4.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5.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 건의 등 주민자치기능

②제1항의 기능 중 당해 동사무소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시장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시설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요구한 시설 등을 우선으로 하되 동사무소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동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①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동장이 한다.

②동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의 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①시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강사) ①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동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은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하되, 「별표」가 정

하는 바에 따른다.

③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 등) ①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주민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주민참여) ①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관할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①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①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동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5조(설치) 동사무소의 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제1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구성 등) ①위원은 지방의회 의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동장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③동장은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등에서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연임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고문) 위원회에 위원 중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20조(간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해촉) ①동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기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제22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 또는 지정된 공무원은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4조(실비보상 등)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자치센터 및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별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 수강료 및 사용료

구 분	기 준	수강료 및 사용료	비 고
기 술 교 육	1인 / 1개월	25,000원 이하	
문화 · 취미교실	1인 / 1개월	18,000원 이하	
체 육 시 설	1인 / 1개월	35,000원 이하	

○○시(도) ○○구(시)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준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 "단체"란 관할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동사무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2장 주민자치센터

제4조(설치 등) ①자치센터는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

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자치센터의 동사무소별 명칭은 당해 동사무소의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시장)이 정한다.

제5조(기능) ①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문화 행사, 취미교실,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2.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3.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4.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5.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 건의 등 주민자치기능

②제1항의 기능 중 당해 동사무소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구청장(시장)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시설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요구한 시설 등을 우선으로 하되 동사무소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①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동장이 한다.

②동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의 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

③구청장(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동장,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①구청장(시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강사) ①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 ①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동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은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하되, 별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 등) ①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주민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주민참여) ①구청장(시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관할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시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시장) 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①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①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동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5조(설치) 동사무소의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제1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구성 등) ①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동장은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③동장은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등에서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⑤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간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해촉) ①동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기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제21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 또는 지정된 공무원은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실비보상 등)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자치센터 및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재3조(다른 조례의 폐지) 동정자문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③○○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